

1. 개정이유

가축분뇨 처리기술의 발달, 액비의 이용처 확대 등 최근 액비화 여건 변화에 따라 가축분뇨 액비의 기준을 탄소중립 및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정책방향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한편, 타 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자가 고품질 부숙 액비를 생산할 수 있도록 가축분뇨 액비의 기준을 정비함(안 제3조)

나. 가축분뇨 해양배출 금지, 축산업 허가제 도입 등의 타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인용 조문을 현행화함(안 제4조, 제7조, 제8조, 제9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 없음

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

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단서를 삭제한다.

제4조제1항제3호 중 “정화처리 또는 해양배출”을 “정화처리”로 한다.

제7조제1호 중 “등록”을 “허가를 받거나 등록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법 제12조제6항”을 “법 제12조의2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「축산물위생관리법」 제9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”을 “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관리인증기준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제1호 중 “축산업”을 “축산업 허가증 또는”으로 하고 “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”을 “안전관리인증기준”으로 한다.

제9조제6호를 삭제한다.

별지 제1호서식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기준(이하 “지정기준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「축산법」 제22조에 따른 축산업의 등록을 한 농장일 것
2. 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맞는 농장일 것
3. 「축산물위생관리법」 제9조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 농장일 것
4. (생 략)

제8조(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의 절차·관리 등) ①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신청서(지정사항 변경신고서)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축산업 등록증 사본 및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 농장 지정서 사본 각 1부
2. ~ 4. (생 략)

-----.

1. -----
----- 허가를 받거나 등록 -----

2. 법 제12조의2-----

3.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관리인증기준 -----

4. (현행과 같음)

제8조(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의 절차·관리 등) ① -----

-----.

1. 축산업 허가증 또는 -- 안전관리인증기준 -----

2. ~ 4. (현행과 같음)

<p>② ~ ⑥ (생략)</p> <p>제9조(퇴비·액비의 이용촉진 등)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장· 군수·구청장이 수립하는 퇴비 ·액비의 이용촉진계획에 포함 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6. <u>해양에 배출하는 가축분뇨의 감축 방안</u></p>	<p>② ~ 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9조(퇴비·액비의 이용촉진 등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삭제></u></p>
---	---